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5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내용	처분근거
(주)우주건설 (김사중)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90	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 (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)	과태료 (금400,000원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9조 제3호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